
성별영향평가센터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회 및
2009년도 착수보고회

일시: 2009. 3. 20(금) 14:00~17:00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313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프로그램

■ 일시: 2009년 3월 20일(금요일) 14:00~17:00

■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313호)

■ 프로그램

14:00~14:10	사 회	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
제 1 부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		
14:10~14:40	발표1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 방안」 발표자 : 한정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40~15:10	발표2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자 :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5:10~15:40	토 론	김영주 (충남 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장석준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
15:40~15:50	휴 식	
제 2 부 2009년도 착수보고		
15:50~16:10	발표3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발표자 :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6:10~16:40	토 론	김양희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Adjunct Faculty /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차인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16:40~17:00	종합토론 및 정리	
17:00	폐 회	

■ 참석자

연구진:

김경희(KWDI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백영주(KWDI 선임연구위원)
양애경(KWDI 연구위원)
한정원(前 KWDI 연구위원)
김들순(KWDI 연구위원)
송치선(KWDI 연구원)
장운선(KWDI 연구원)
이선민(KWDI 연구원)
안지연(KWDI 인턴)
김양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허라금(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김양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차인순(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회관)
김영주(충남 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장석준(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김은신(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목 차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

<발표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결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성 주류화의 이론적 논의

1. 여성주의 성평등 시각에서 본 성 주류화
2. 성 주류화 정책의 통합과 젠더의 긴장
3. 유럽연합의 성 주류화 경험
4.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원칙과 도구의 통합
5. 성 주류화의 성공을 위한 요건

III. 성 주류화의 국제동향

1.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 국제학술심포지엄
2. 해외 사례: 유럽의 성 주류화 전략 경험

IV. 국내 성 주류화 제도 적용 및 수용성

1. 지역의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2. 성 주류화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
3. 성 주류화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V. 결론 및 성 주류화 제도의 쟁점 및 효과적 실행방안

1. 성 주류화 정책논리의 정교화
2. 성 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3. 성 주류화 인프라 지원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5. 거버넌스 체제: 성 주류화 플랫폼 구축
6.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
7. 결 론

<발표2>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결과

1. 연구 개요

- 가. 연구 목적
- 나. 연구 내용
- 다. 연구 방법

2. 연구 결과

-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 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운영현황
-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 및 관련규정
- 라.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및 결과활용 분석

3.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가.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강화
- 나. 성별영향평가의 지표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 다.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전문가 지원 강화
- 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연계 강화

2009년도 착수보고

<발표3>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결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5. 기대효과
 6. 연구기간(2/2년차): 2009.1-12(12개월)
 7. 과제담당자
 8. 연구산출물
 9. 참여적 실행연구의 세부내용(지역연구기관/KWDI)
- <목차>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기관 및 연구진
 - 총괄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정원, 김양희, 허라금, 장윤선
 - 단위과제 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김선옥, 장명선, 한지영, 선민정
- 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 연구결과¹⁾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유엔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 1995)를 기점으로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를 여성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성 주류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년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도에 시범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함. 아울러 2006년에는 성 인지 예산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공포하는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함.
- 성 주류화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폭넓은 홍보, 치밀한 이론 작업, 과학적인 도구 및 방법론의 연구개발,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이 중요하며 또한 법률 시스템은 성 주류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임.
-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적용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수행함.

1) 관련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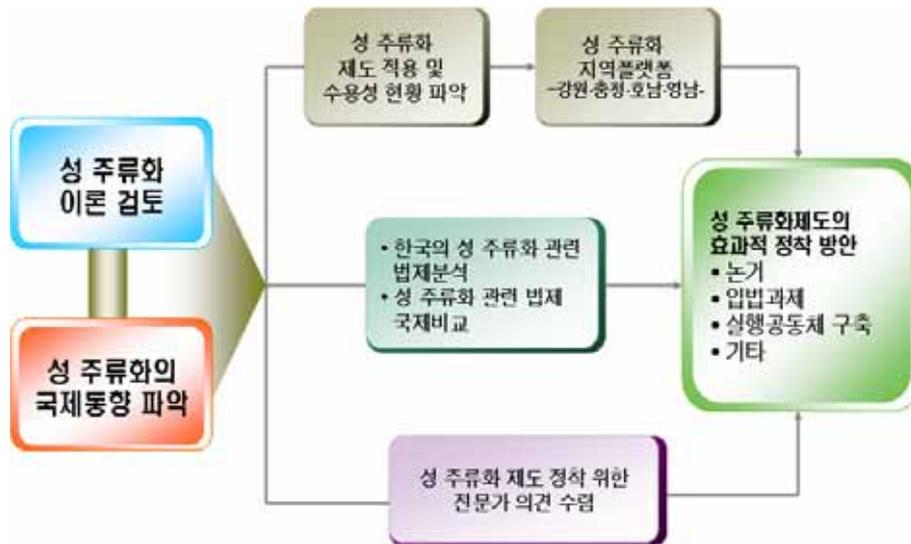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총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행)
- 성 주류화의 기반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단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수행)
-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한국여성정책연구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저)

연구 1차 년도인 2008년에는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과 제도 적용의 현실 또는 전망을 분석하고, 성 주류화의 법률 체계의 강화방안과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적용의 현실과 전망 분석
-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파악
- 성 주류화 관련 법제 분석
-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 전략
-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GM파트너십 구축
 - 전국 GM파트너십 구축: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운영
 - 국내·외 GM파트너십 구축: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해외 전문가 면접



<그림> 연구모형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성 평등과 성 주류화 관련 이론, 성 주류화 정책 및 제도, 성 주류화 관련 법률 검토 등.
- 해외 전문가 면접: 유럽의 다양한 성 주류화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문가 면접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어려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함.

- 공무원 설문조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성 주류화 개념 및 관련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 및 제도(또는 정책)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함.
- 전문가 자문의견 조사: 국내의 성 주류화 제도 관련 학자 및 여성정책 전문가, NGO활동가들의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 국내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평가, 향후 성 주류화의 적용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함.
-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의 이론적·정책적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A New Global Trend on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ies in Korea)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 성 주류화 플랫폼 개최: 지역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을 돕고 실행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을 구성, 운영함.
- 자문회의 개최: 연구의 각 단계에서 연구방향과 범위, 국제학술심포지엄, 전문가 및 공무원 조사, 중간보고 등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운영함.

다. 기대효과

- 국내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논리 및 전략 개발
- 성 주류화 적용의 현실 파악
- 성 주류화 관련입법의 제·개정 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적 실천에 기여
- 성 주류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체계의 입법화에 기여
- 성 주류화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
- 국내 성 주류화 인프라와 역량 강화에 기여
- 성 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위상 강화에 기여

II. 성 주류화의 이론적 논의

1. 여성주의 성평등 시각에서 본 성 주류화

- 벌루(Verloo, 2004)와 스노우(Snow, 1986) 등의 사회운동이론의 요소를 빌어 성 주류화를 기존 접근과 비교한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전략	진단	원인의 속성	예후	필요한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무엇이 그 문제의 책임인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누가 해야 하는가?
동등 처우	• 법에서의 불평등,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법률/ 권리	• 개인의 책임	• 법률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동등한 권리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자
특정 평등 정책	• 남성과 여성의 불공정한 시작 위치 • 여성들의 집단적 불이익제기되지 않은 여성들의 특정 문제들 • 여성들의 접근성, 기술, 또는 자원의 부족	• 개인적 수준과 구조적 수준의 다양함	• (특정 집단의) 여성의 문제를 위한 특정 계획과 재정 프로젝트	• 성평등을 위한 기관 • 때때로 기존의 기관들의 제휴
성 주류화	• 일반적 정책과 사회적 제도 내에서 젠더 편견으로 인한 성불평등	• 정책입안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 모든 정책안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과정의 (재)구성	• 정부 • 정책을 결정하는데 포함된 모든 행위자들.

- 성 평등은 여성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따라 상호 대립적인 경합적인 개념이나 영역 할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생물학적 성차가 갖는 맥락적 의미와 사회적 성차로서의 권력차이(젠더)를 고려하는 것은 성 주류화 정책 논의에서 주안점임.
- 사회구성원들의 성 차이를 정책이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가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 ‘남성과 여성의 동등’ 대우만으로는 성평등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하기도 함. 동등입법은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우를 역차별로 보기 때문임. 즉 절차적 평등개념은 결과적으로 현실의 성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보다는 용인하게 되는 것임.
-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를 제외한 타 영역에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논쟁이 있음. 즉 성차의 제도적 승인이 애초의 의도와 달리 남성 지배적 영역이나 지위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 성차에 대한 역동적 접근법은 젠더를 따지지 않는 성적 평등의 해석방식이 결과적인 성적 불평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줌.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차는 단순한 차이라기보다는 권력의 불평등임. 즉 성에 따라 불평등한 권력을 분배하는 권력구조가 생산하는 차이, 젠더임.

- 아이리스 영(Iris Young, 1990)은 분배적 정의는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억압과 지배 개념의 틀 속에서 성평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봄. 이와 함께 일상화되고 내면화되어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게 된, 더 나아가 공모하게 되기도 하는 구조로서의 억압은 폭정에 의한 억압보다 제거되기 어렵고 심각한 것임. 이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항하기도 힘들.
- 성 주류화는 의식하지 않으면 차별로 보이지 않는 혹은 일상적이고 때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억압적 권력을 인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평등은 개인이 처해 있는 맥락의 차이를 인정하나 성 주류화는 차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성차에 기초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위계를 지지하지 않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임.

2. 성 주류화 정책의 통합과 젠더의 긴장

- 전반적인 억압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성 주류화와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절차적 정책 과정으로서의 성 주류화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 있음.
- 정책 실천에서 성 주류화는 ㉔성평등과 성 정의를 증진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동시에, ㉕성 분석을 일반 정책에 통합함으로써 주류 정책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성 주류화는 일반적으로 성평등 의제를 위한 구상을 다른 정책 의제와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다른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젠더 주류화를 사용함으로써 젠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함.
- 그러나 성 주류화는 성평등 문제 자체가 주류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 가치라는 점을 간과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최악의 경우 다른 정책 목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자한(Jahan, 1995)은 성 주류화를 “통합적 접근”과 “아젠다세팅”으로 대비하여 설명하였는데, 실제 성 주류화 제도 적용은 통합적 접근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음.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성평등을 추진해갈 정치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3. 유럽연합의 성 주류화 경험

- 현재 유럽연합은 적극적 조치와 젠더 주류화가 공존하는 성평등의 이중 트랙 접근을 추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 적극적 조치는 EQUAL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특수한 필요’를 추진함. 훈련 및 고용프로젝트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도 초점을 맞추는 등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봄.
- 반면 스트라티가키(Stratigaki, 2005)는 성 주류화가 성평등 노력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적극적 조치를 제거하는데 성 주류화를 활용한 증거로서 EU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함. 즉 EQUAL 프로그램은 여성보다는 사회적 배제집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나타냈

고 성 평등을 주류화하는데 도입된 프로젝트들은 일반 평등정책에 의해 대체되었음.

- 이는 일반정책에 성 인지 관점이 흡수되면서 여성과 젠더관점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통합되고 여성 억압의 문제가 주류화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억압의 여러 문제들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것은 결국 여성 억압을 희석시켜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젠더 억압구조의 해체라는 성 주류화의 기본정신은 사라지고 성 주류화의 “기술적 버전”으로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에 점검하는 도구적 작업만 남게 되는 것을 우려함.
- 성 주류화의 전략과 정책도구들이 다층적인 젠더 위계구조로 둘러싸여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즉 성 주류화가 성평등의 최종목표를 하향조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경계해야 함.

4.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원칙과 도구의 통합

- 성 주류화가 정착하여 실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평등처우와 적극적 조치는 절차적 정책 제도로서의 성 주류화와 함께 발전되어야 함.
- 리즈(Teresa Rees, 2005)의 성 주류화 기저에 있는 세 가지 통합적 원칙과 성인지적 도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원칙	도구
개인을 전인적 인격으로 대우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 일에서의 존엄성 • 동등임금심사 • 인적자원의 현대화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모니터링 • 젠더분리통계 • 평등지수 • 정부의 투명성 • 젠더균형에 관한 입법화 • 자문과정 • 여성을 위한 정부기구
정의, 공정성,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모니터링 • 젠더분리통계 • 평등지수 • 젠더예산 • 젠더영향평가 • 젠더 proofing • 여성학/젠더학, 비저닝

5. 성 주류화의 성공을 위한 요건

- 성 주류화는 기존의 다른 전략보다 더 종합적인 전략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확실하나 주류에 의해 잠식되는 위험을 내포함. 또한 성 주류화의 전략과 정책도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는데 따른 우려도 있음.
- 성 주류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환과정의 역동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즉 어떻게 권력, 구조,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고 정책과 담론에서 구조화될 지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야 함. 이는 전환적 성 주류화가 실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성평등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성 주류화의 전환적 전략은 정책행위자들-성인지 정책 전문가, 운동그룹, 정책담당자 등-사이의 개입과 협력을 요구함.

Ⅲ. 성 주류화의 국제동향

1.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 국제학술심포지엄

가. 행사개요

○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의 이론적·정책적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A New Global Trend on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ies in Korea)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행사 개요 및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 시 : 2008. 4. 24(목) 09:30-17:45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M연구본부²⁾ 성별영향평가센터
- 사용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참가자 : Sylvia Walby 외 국내외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160여명

< 발제자 및 토론자 >

제1세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사회자	김 선 욱(이화여대 교수)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한국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김은실(이화여대 교수)
주제2: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Sylvia Walby (Lancaster University, UK)
제2세션	글로벌 거버넌스와 성 주류화 전략	
사회자	정 순 영(숙명여대 교수)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유엔 여성발전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성과와 과제	Carolyn Hannan ((Director of Division for Advancement of Women, UN)
주제2:	호주의 AusAID의 경제발전과 성 주류화 전략	이선희 ((Director, Gender Thematic Group, AusAID)
토론자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제3세션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사회자	박영란(강남대 교수)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베를린과 독일의 성 주류화 제도화 경험	Regina Frey (Head of Genderbuero, German)
주제2: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와 과제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Gender Mainstreaming연구본부장)
토론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	
	김영옥 (본원 성인지예산센터장)	

2) 2008. 11. 본원 조직개편이후 성 주류화연구실로 개칭됨.

나. 시사점

- 성 주류화 제도의 적용 방식과 공감대 형성
- 시행주체와 탈정치화, 민주주의: 전문성과 민주성의 관계
- 성 주류화의 효과 및 설득 논리의 필요성
-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
 - 심포지엄 결과 강력한 법적 기반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 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으로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함.
 - 국가 목표와 성평등 목표의 결합, 고위층의 정치적 의지
 - 성 주류화와 여성특화정책의 균형
 - 다양한 소소집단과의 연대 전략

2. 해외 사례: 유럽의 성 주류화 전략 경험

- 유럽의 성 주류화 전략 실행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의 국가에서 다양한 성 주류화 제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문가들을 면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성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임.
 - 둘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은 훌륭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성 주류화의 목적이 기술적인 습득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 주류화의 근본 목적을 인지시킬 수 있는 지표나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셋째, 성 주류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일부 정책에서의 자율적인 도구 적용 이외에 구체적인 지역 정책에까지 성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차후 과제가 필요함.
 - 넷째, 성 주류화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고위직의 의지, 법적 기반 등 이외에 모든 시행 주체가 관련 논의를 이끌어내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성 주류화는 쉽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없는 장기적인 전략임.

IV. 국내 성 주류화 제도 적용 및 수용성

1. 지역의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확대하고자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을 개최함.
- 성 주류화의 삼각다리 주체, 즉 관료, 전문가, 여성NGO에 더하여 의회와 언론 관계자 등과 함께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별 실행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개요

순서	일시 및 장소	주제	취지 및 내용	발제자	주관기관 및 담당자
1차	2008. 08. 20 15:00-, 대전 유성리베라 호텔 회의실	충청권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현황 및 성 주류화 적용 사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현황을 살펴보고 ‘충북 여성희망일터 사업’을 성 주류화 사례로 제시함	민경자 (전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성별영향평가센터장
2차	2008. 8. 27 15:00-, 강원도 춘천베어스관광호텔 의암홀	강원도 정책의 성 주류화 현황과 과제	강원도 지역의 성 주류화 인프라와 성별영향평가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성 주류화 전략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박기남 (춘천여성민우회 이사)	춘천여성민우회, 박기남 이사
3차	2008. 8. 27 15:00-,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회의실	부산광역시 및 기타 영남권의 성 주류화 현황	부산광역시 및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지의 성 주류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성 주류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모색함	주경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장)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경미 정책연구팀장
4차	2008. 10. 7 14:00-, 광주 광역시의회 회의실	광주광역시의 성 주류화 현황과 과제	광주광역시의 성 주류화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주제별 개선 방안을 모색함	안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여성민우회, 백희정 사무국장

- 플랫폼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에 따라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 여성의 정치·경제 세력화에 대한 지적, 성 주류화의 구체적 사례 개발 작업의 중요성이 제기됨.

2. 성 주류화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조사 목적

-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 수용과 적용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본 조사는 고위직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성 주류화의 효과적 제도 적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응답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중 334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총 109명으로 응답율은 32.63%였음.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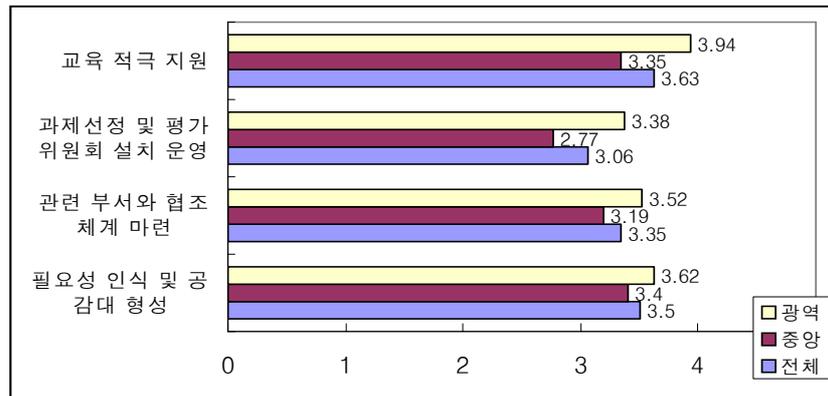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및 내용
■ 응답자의 기본사항	- 소속기관, 소속부서 - 여성정책 관련업무 수행 경험 - 직군, 직급, 근속연수 - 성별, 연령
■ 성인지 정책의 개념과 경험	- 성인지 정책의 이해 및 경험 - 성인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 정도(사례: 공중화장실)
■ 조직 내 성 주류화 현황	- 소속부서의 적극적 조치(관리직의 여성 우선 승진/ 출산·육아휴직/ 위원회 여성 참여율)
■ 성인지 정책의 적용	- 성별영향평가의 여건 및 지원체계 -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성 - 성인지 예산 적용을 위한 요건 - 성인지 예산의 효과성
■ 성인지 정책(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 관련 법규 정비 및 계획 수립 - 성 주류화 전략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성별분리통계 구축 -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 - 공무원의 성인지 향상 교육

나. 조사결과

- 조사결과 응답자의 소속 기관 유형에 따라 응답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건 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남.
-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기관장 및 고위직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의 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교육지원이, 성인지 예

산은 고위직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여성정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인지 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음.

- 또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성별분리통계 등을 생산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그림>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여건에 대한 인식

3. 성 주류화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이론적 논의, 추진체계, 성 주류화의 중요한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실행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응답률: 성 주류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활동가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51명이 응답함.
- 조사내용

영역	내용
일반적 특성	소속, 성별
성 주류화의 개념 및 성평등 논의	성 주류화의 성평등 정책 전략으로서의 효과성 산술적 성평등 논의
추진체계	여성부의 적합성 및 업무비율
성 주류화 제도의 도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제도의 효과성 제고
성 주류화 실행 전략	통합적 접근과 아젠다 세팅의 활용
개선 방안	성 주류화 주체의 역할, 개선방안

나. 조사결과

1) 성 주류화 개념 및 성평등 논의

- 전문가들은 성 주류화 제도가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강화가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2) 성 주류화의 추진체계 및 주요 제도

- 성 주류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성부의 인력이나 자원 등을 확충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여성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고,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부의 업무 비율에 있어서 성평등 조정업무가 집행업무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8%이상임.
- 또한 성 주류화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성별영향평거나 성인지 예산 모두 기관 내부의 추진체계 및 법적 기반 강화, 고위직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음.
- 성 주류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제도로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와 함께 성 인지력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의 성 인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관을 확대하고 전담부서 및 인력을 확충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여성부와는 별도로 전 부처의 성 주류화 정책을 조정·연계할 수 있는 연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3) 성 주류화 실행전략 및 개선방안

- 성 주류화 실행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과 통합적 접근이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되거나 병행해야 함.
- 정책 메커니즘을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여성부의 위상 강화, 정교한 지표 개발 등이 거론됨.
- 성 주류화의 세 주체에 대한 역할로는 공무원은 성인지적 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우선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지표개발과 방법론 개발, 이론적 제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NGO는 정책협력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V. 결론 및 성 주류화 제도의 쟁점 및 효과적 실행방안

1. 성 주류화 정책논리의 정교화

- 여성 특화 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 모두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을 위한 것이지 결코 별개의 것이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평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성평등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별 격차가 작으며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인 논리개발이 유용할 것임.

2. 성 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 새로운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함. 전담 부서나 전담 공무원이 없으면 일회성으로 땀질하는 식의 보고서를 내는 것에 그칠 것이며, 이를 적절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역량이 부족할 경우 각급 기관이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기 때문임.
- 또한 우선 현재의 여성부 조직으로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음. 성 주류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위상이 현재보다 높아져야하고, 법과 조직, 예산 등이 뒷받침되는 권한이 필요함.

3. 성 주류화 인프라 지원

-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성별 분리 통계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됨.
- 아울러, 평가제도의 효과적 관리·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 현재 성별영향평가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과제의 특성이나 적용하는 지표, 결과 활용 등의 면에서 차별성이 없음. 자체평가의 양적 확산에 집중하기 보다는 향후 심층평가의 비중을 늘리면서 대상 과제를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 공무원의 자체평가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전문가들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환류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밀도 있고 전략적인 접근을 제안함.
- 심층평가와 자체평가를 차별화하기 위한 지표의 수정과 별도의 지침 마련 등의 작업도 필

요함.

-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규제업무라는 인식을 불식해야 함. 규제가 아니라 촉진(부처 정책의 성평등 통합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으로)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에서 하나의 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게 되므로 거시적 차원에서 큰 틀 제시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를 불식하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 큰 틀의 분석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평가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량적 분석과 함께 정성적 분석을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마련되어야 함.

5. 거버넌스 체제: 성 주류화 플랫폼 구축

- 성 주류화에는 성평등한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 나라에서 아직 성 주류화의 가장 기본 단계인 여성의 주류화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남.
-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젠더민주주의가 형성되지 않은 채 이루어질 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의 주체인 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6.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

- 성 주류화는 성별 역할과 권력관계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임.
- 성 주류화 전략 자체가 성별 역할과 권력 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움. 성 주류화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국가 행정수반이나 내각, 국회 등과 같은 최고위층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보이면서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의 하나로 성평등을 포함하는 것임. 아울러, 법령에 명확한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7. 결론

- 한국의 성 주류화는 아직 초기단계임. 이에,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을 받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그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성 주류화는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 주류화의 토착화를 위한 논의 과정 없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단체 및 전문가 집단이 제도화를 요구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수정과 보완, 토착화를 위한 세밀한 논리 개발 등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진 : 김정희, 백영주, 김둘순, 이진옥
- 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 연구결과

1. 연구 개요

가.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되고 실행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과 실행체계를 파악하여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성별영향평가와 성 주류화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요건을 살펴보았음.
-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해 온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 결과활용 및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음.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분석을 하였음.
-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방

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다. 연구 방법

-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음.
-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및 수행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방향 및 내용, 면접 및 설문조사지 개발, 연구보고서 검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음.
- 2007년 기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및 수행부서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정 및 이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정책의 환경변화와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선정과정, 성별통계의 활용 등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면접 조사하였음.

2. 연구 결과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1) 캐나다의 사례

-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와 준주정부에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기제로서 그들의 관할 지역 내에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성별영향평가가 정부업무 수행과정에 통합되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성 지위 향상을 책임지는 연방, 주, 준주정부 장관들’의 성명(제14차 연례회의, 1995. 5)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 위원회(interdepartmenta committees)를 통해 여성지위처나 여성부서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조정, 자문하고 있음. 1999년에는 여성지위처에 성별영향평가 전담부서인 성별영향평가국(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을 설치하여 모든 부서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캐나다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하기도 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기도 함. 예를 들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고용 기준과 같이 여성과 관련한 정책영역은 대개 주정부가 책임을 짐. 성평등 문제들은 여러 수준의 정부가 개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준주정부의 개입 여부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 1982년 이후 ‘여성 지위 향상을 책임지는 장관들’(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Status of Women)의 노력으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 간에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각 장관들은 매년 회의를 열어 여성관련 정책 사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였음.

<표 1> 캐나다 연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직

정 부 조 직	역 할
여성지위처(Status of Women Canada) - 성별영향평가국(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이행 - 성별영향평가 관련 훈련 지침서 및 도구, 절차 개발 - 연방정부 부처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지원 - 부처 간 위원회 구성
연방정부 부처 담당부서 - 시민권 및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GBA팀(2명)/전략정책 및 파트너십 국 -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Skills Development Canada): GBA 담당(2명) / 젠더 자문 네트워크 -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Canada): GBA과(3명) /젠더 자문 네트워크 - 보건부(Health Canada): GBA팀 -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성평등과	- 여성지위처가 개발한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근거, 특화된 지침 개발 - 성별영향평가 이행 *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정책 개발 시 성별영향평가가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님.
부처 간 위원회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Gender-Based Analysis)	- 각 부처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조정 및 자문
여성 지위 향상을 책임지는 연방, 주, 준주 정부 장관들(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Status of Women)	- 연방, 주, 준주 정부 간의 협력 증진 - 성평등 정책 사안 공동 대처

- 이와 같이 캐나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행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전담 부서 설치, 정책 사례 연구, 정책 지표·지침 등 도구 개발, 교육훈련, 정보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왔음. 지방정부에서의 성별영향평가는 그 추진 양상은 다양하나,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안착, 도구·지침 개발 등을 시도하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사회 전 부문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실행에 있어 성평등은 “평등”에 통합이 되는 추세(토론토시의 사례)이기도 함.
- 성 주류화는 모든 곳(everywhere)에서의 젠더 문제를 부각하려는 시도였으나 그 결과 그 어느 곳(nowhere)에도 젠더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함.

2) 네덜란드의 사례

- 네덜란드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 당시 성 주류화 도구를 개발하고(Verloo and Roggeband, 1994), 실제 실행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유일했음. 네덜란드의 정책 과정은 열려 있는 편이며, 정책의 개발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문이나 학자들과 연결되어 있음.

<표 2>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 개요(1995-2006)

담당부처 (Ministry)	사업수	주체	연도
교육문화부	5개 (교육 분야 4, 문화 1)	국가 비서관(2) 의회 (일반) 공무원	1995, 1996(2), 1997, 2003
농림부	4개	부처 내 평등담당관 (4)	2001, 2002, 2003
주거, 공간계획, 환경부	3개 (주거, 공간계획, 토지 사용)	부처 (3)	1997, 2000, 2001
사회고용부	4개 (노동시간법의 돌봄 측면, 재통합 정책, 부수적인 연금안, 인생경로)	의회 NGO	1998, 1998, 2000, 2004
재정부	2개 (세금 정책)	의회 (2)	1998
법무부	2개 (가족법, 결혼정착)	부처 내 평등담당관(2)	1996
내무부	1개 (선거체계)	의회	1996
건강, 복지 및 체육부	1개 (시민 지원법)	의회	2005

자료: Roggeband, C. and M. Verloo(2006), Evaluating Gender Impact Assessment in the Netherlands(2006: 622).

- 성별영향평가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 네덜란드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했던 세 가지 요소, 정치적 기회, 네트워크 동원 정도, 전략적 조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함. 네덜란드의 경험은 불안정한 관료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네덜란드는 캐나다와 함께 성별영향평가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임. 그러나 네덜란드는 법적인 추진 체계 없이 성별영향평가를 존속시켜 오고 있음. 네덜란드의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의 경험은 이 도구가 관료제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음. 또한 도구적 측면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원인들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정책/프로그램/사업이 성별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까지 성평등의 목표에 가까이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3) 영국의 사례

- 영국의 성별영향평가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의무(Gender Equality Duty)에 그 법적 준거를 지니고 있음. 양성평등의무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성평등을 제고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는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도입한 것임.
 - 양성평등의무는 개개인들이 잘못된 관행에 도전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 내에서 양성평등의무가 실행된 것은 2002년에 합의된 양성평등에 관한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³⁾인데, 이는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여성의 삶에 실질적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을 하겠다는 동의를 의미함.
- 여성 장관(Ministers for Women: MW)은 최근에 조직 개편 이후 여성평등장관(Ministers for Women and Equality: MWE)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이들은 국무위원 가운데 1인의 장관이 소속 부처의 장관직과 겸직하고 있으며, 다른 1인은 여성평등국의 대표로 국무위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음. 여성장관은 통상산업과(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역 및 지방정부(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등을 거쳐 그리고 현재에는 여성평등장관의 위치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소속되어 있음.
 - 여성평등장관은 여성평등국을 통해 지원받으며, 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촉진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여성위원회와 기회평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와 밀착하여 업무를 추진함.
 - 성 주류화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양성평등 조정그룹을 이끌어 평등을 도모하고 해당 부처 내에 정책과 서비스 내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정착시킴.
- 여성국은 여성평등국으로 1997년 전환되었는데, 성 주류화의 시도와 성과는 2007년 최근 여성평등국이 정부평등부(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O)로 그 위상을 거듭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음.
 - 정부평등부는 여성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여성과 성적 소수자, 장애 등의 문제를 포괄하며 '평등을 정부의 중추에 위치 짓는' 부서로 거듭나고 있음.
- 평등인권위원회는 국가여성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비부처기구로, 평등법이 도입된 이후 2006년 그 전신인 기회평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와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 장애인권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가 함께 모여 탄생하였음.

3) 'United Kingdom Champions Gender Equality in Public Policy,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But Closing Gap between Sexes Unfinished Business, Experts Told', UN General Assembly: WOM/1694, Committee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08년 7월10일, <http://www.un.org/News/Press/docs/2008/wom1694.doc.htm>, 2008년 7월29일 확인

<표 3> 영국 양성평등관련 정부 조직과 2006년 평등법 이후 변화 내용

기존명칭	주요 기능	변화명칭	변화내용
여성국 (WU) ⇨ 여성 평등국 (WEU)	· 정책생산 및 연구 · 여성평등장관 보조 · 성 주류화 도구 개발 · 공공서비스협약 내 양성평등 목표 설정 · 여성장관 소속부서에 위치	정부평등부 (GEO)	· 독립된 부서로 격상
여성장관 (MW)	· 두 명의 장관(국무위원으로 소속 부처 내 장관직 겸직자 및 여성평등국 대표로 국무위원 보좌) · 여성관련 정책 개발 및 범정부적 성평등 정책의 조정 역할 · 성 주류화 관련 양성평등 조정그룹 주도	여성평등 장관 (MWE)	
국가여성 위원회 (WNC)	· 여성정책 자문기구 · 여성 사안 및 여성단체 대표하여 정부와 교류 중재 역할 담당	동일	
기회평등 위원회 (EOC)	· 성차별과 성과 관련된 불평등 사안 담당 · 남성과 여성의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의 모범사례 촉진 · 평등관련 법률 강제 및 인권법 순응 독려 · 기업 및 봉사 단체, 공공부문, 개인 등에 자문	평등인권 위원회 (EHRC)	· 기회평등위원회(EOC), 인종평등위원회(CRE)와 장애인리위원회(DRC)와 통합 · 평등법 구속력 보유양성평등의무 시행 감사 및 불이행시 강제력 행사

- 이러한 성 주류화의 성공 요인의 지침서를 통한 성 주류화의 적극적 노력의 수사적 지침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무의 도입이 성 주류화 정책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근거는 특히 양성평등의무 조치가 영국 내 모든 공공기구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찾아질 수 있음.
- 또한 양성평등의무는 공적 서비스와 기능이 위탁되어 있는 공공기구를 포함하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와 자발적인 단체들에도 적용됨. 즉, 광의적인 개념의 공공기구에 대한 양성평등의무의 실행 조치는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한 성 주류화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을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산하였음을 의미함.
- 양성평등의무는 기존의 성차별 금지법과 동일임금법, 그리고 최근의 평등법의 혼합물로서, 기존 성평등의 제도적 틀을 재기획하고 수정하여 발전하였음. 양성평등의무는 성 주류화 정책과 여성관련 정책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상정하는 대신 기존의 여성관련 입법안과 여성정책을 통합하여 실행함으로써 성 주류화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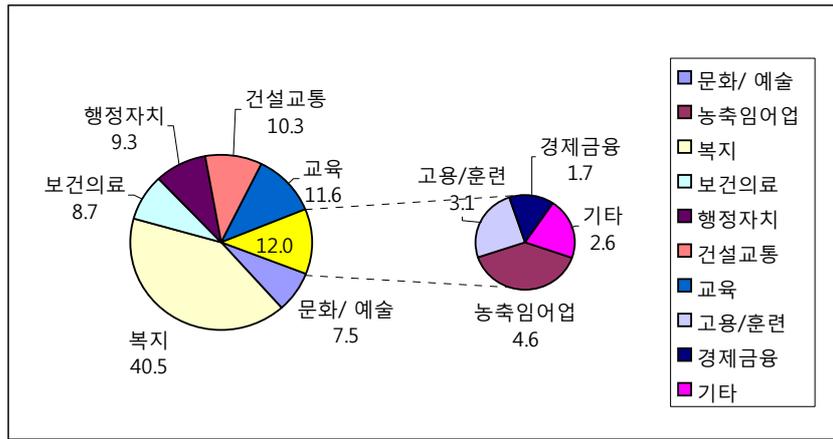
-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134개 과제, 기초 자치단체 489개 과제로, 2006년에 비해 광역은 176%, 기초는 273%가 증가했음. 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3개 기관이 3개의 심층평가 과제 시범사업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16개 기관, 34개 과제, 2006년에는 149개 기관, 254개 과제를 실시하였음.
- 2007년도에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제수가 크게 증가하여 226개 기관에서 총 623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8년에는 248개 기관에서 1,436개 과제를 실시하여 2007년 대비 과제수가 2배 이상 확대되었음.

<표 4>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과제수 변화 추이(2004-2008)

(2008. 9 기준)

	광역			기초		
	기관	과제수	평균 과제수	기관	과제수	평균 과제수
2004	3	3	1	-	-	-
2005	16	34	2.1	-	-	-
2006	16	75	4.7	133	179	1.3
2007	16	134	8.4	210	489	2.3
2008	16	268	16.8	232	1168	5.0

-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경향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과제나 기초자치단체의 과제의 경우 복지, 교육, 건설교통, 행정자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선정과제를 보면 복지 분야가 49.4%로 과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교육 분야의 과제가 9.1%를 차지하였고 건설·교통 분야가 8.7%, 행정자치 분야 과제가 7.9%로 뒤를 이었음.
-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선정과제를 보면 복지 분야가 40.5%를 차지하고 교육 분야가 11.6%, 건설·교통 분야가 10.3%, 그 뒤를 행정자치, 보건 의료, 문화/예술이 뒤를 이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의 과제 비율이 높지만 복지 분야 외 다른 분야 간의 비중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1〉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과제

- 2008년에는 전체과제 대비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도 71%를 차지할 만큼 성별영향평가 과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비중이 높아졌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살펴보면 광역 자치단체의 과제 비중이 줄어들고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비중이 해가 거듭되면서 높아지고 있음.
- 2006년에는 지역별로 기초자치단체 비중의 차가 컸지만 2008년도에 들어서면 16개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과제 대비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비율이 70%를 넘어섰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약 97%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음.
- 지역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과제가 전체과제에서 85%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무게중심이 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초자치단체로 옮겨가고 있음.

<표 5>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비중

시도	자치단체 전체 과제 대비 기초자치단체 과제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부산	93.8	96.9	96.9
대구	94.3	90.9	77.8
인천	0.0	83.3	84.8
광주	33.3	77.3	84.8
대전	71.4	71.4	75.0
울산	35.7	65.2	74.6
경기	0.0	76.9	71.4
강원	23.1	59.8	74.4
충북	40.9	83.8	80.7
충남	82.4	74.3	75.0
충남	88.9	85.7	93.4
전북	66.7	69.7	74.6
전남	78.6	83.0	88.0
경북	80.0	83.3	92.1
경남	80.0	93.0	93.5
계	70.5	78.5	81.3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 및 관련규정

-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의 제정시기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04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이후 대구시, 울산시, 충청북도 순으로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이 마련되었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만 성별영향평가의 근거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다가 2008년 6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성별영향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표 6>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제정 시기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	2004	2003	2004	2004	2007	2008	2005	2004	2007	2005	2007	2007	2006	2006	2006	2007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서울시,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의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산과 울산 등 총 5개 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 관련규정을 두고 있음. 흥미로운 것은 성별통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소속기관, 투자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I-7>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시도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예산편성, 중장기 지방계획)
		성별표기/구분	기초조사 명시여부	
서울	○	○		
부산	○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
경기	○	○		
강원	○	○	○	○
충북	○	○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	
충남	○	○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전북	○	○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전남	○	○		
경북	○	○		○

시도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예산편성, 중장기 지방계획)
		성별표기/구분	기초조사 명시여부	
경남	○	○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	○
제주	○	○		

<성별영향평가 규정(부산)>

제9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성별통계 규정(강원도)>

제8조(통계의 성별 구분 표기 등) ①도지사와 투자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 규정(울산)>

제6조 (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시장은 예산의 편성(「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예산의 편성을 말한다)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말한다)의 수립 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시행과 성별영향평가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도의 모든 행정기관’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시와 강원도는 시도와 그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의 소속·투자기관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표 8>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범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치단체	○	○	○	○	○	○	○	○	○	○	○	○	○	○	○	○
소속·투자기관				○					○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음.
 - 2008년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살펴보면 모두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의 운영목적에서 차이가 있음. 서울시를

포함한 10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의 운영목적을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음. 반면에 부산시를 포함한 4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 16개 광역시도는 모두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성별통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할만한 점은 시도별로 성별통계의 사용목적이 다르다는 것임. 먼저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성별통계가 여성정책을 위해 일차적으로 활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음. 반면에 부산시를 포함한 6개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각종 통계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 성별통계의 사용을 여성정책의 수립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고 있음. 강원도와 충북의 경우는 성별통계의 작성과 함께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동시에 명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이와 관련된 조항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남, 경북으로 모두 5개 기관임. 울산시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의 시행을 위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음. 울산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예산정책의 수립 등)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 인지도 예산 편성의 시행과 성별영향평가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음.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임.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소속기관, 투자기관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시를 포함하여 2개 기관임.

라.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및 결과활용 분석

-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견해 및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5점 만점에 평균 4.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의 필요성이 평균 4.22점,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은 평균 3.84점, 대상과제 선정기준 인지정도가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음.
 - 여기서 전문가 자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문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낮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전문가 자문지원이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전문가 자문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는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단계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 여성부가 2007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제공한 평가지표 9개에 대한 전반적 이해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8점으로 나타남. 그리고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적절하였는지에 대

해서도 5점 만점에 평균 2.50점으로 나타났음. 지표이해의 용이성과 보고서 활용의 적절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쉬운 지표가 곧 보고서 작성에 적용하기도 쉽다는 것은 아니었음.

-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에 대해서 응답자 중, 약 70%가 ‘보통, 거의 적절,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반면, 약 30%는 ‘매우 부적절, 약간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지원체계 강화 및 여성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방법은 응답기관 중에서 53.1%는 담당부서가 일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각 부서에서 대상과제를 제출받은 후에 담당부서가 선정한 기관은 2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는 전체응답자 중 ‘전혀 참여가 없었다’ 49.4%, ‘거의 참여가 없었다’가 33.9%로 나타났음. 따라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과정에 지역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우선지원과제를 보면, 먼저 여성부의 가장 우선과제는 전문가 지원 확대가 전체응답자의 19.2%, 예산지원 15.8%, 교육훈련확대 13.6%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해야 할 우선지원 과제는 예산지원이 전체응답자 중 21.5%, 교육훈련확대 16.6%, 전문가 지원 확대 15.7%, 인력지원이 13.0%로 나타났음.

3.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가.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강화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이는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을 염두에 둘 때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에는 이 제도가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양성 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목적을 명시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성별통계가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별통계가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별통계에 관한 규정과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포함시켜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책의 품질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의 긴밀성을 생각해 볼 때 지방재정법이 우선 개정되고 그 다음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성인지 예산 관련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정책 환류와 제도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에 **‘제도개선과 정책 환류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정부 복지사업의 상당부분이 민간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나. 성별영향평가의 지표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 집행과 관련한 성별통계, 관련위원회의 성별 참여 비율, 사업 수혜집단의 성별 비율 등은 정량지표로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정량 지표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일지표로 모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보다는 **사업 유형별로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를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중복적인 평가 지표는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지표의 수를 줄이고 지표별로 점검 포인트에 따라 자세한 안내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다.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전문가 지원 강화

- 기관별로 과제선정을 할 때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여성정책 전문가가 결합하여 과제선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 관련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이때, 위원회의 위원들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제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트는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자문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음.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자치단체 산하 여성정책관련 연구원이 없는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임.
-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단의 활성화와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의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일차적으로 자문을 하는 위치에 있음.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인 여성부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어야 함.
-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위해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기관의 사정상 별도의

기구 구성이 어려울 경우 여성관련 위원회에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역할을 부여하여 진행과정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관련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 학계, 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관련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과제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임.
- 각 시도지사나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등 주요 관계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환류실적 등이 보고되도록 하는 한편,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임.

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연계 강화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회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제도개선 방안 및 환류점검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전문가의 컨설팅 등에 드는 예산을 여성부가 지원해야 할 것임.
- 여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기관 중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담당 공무원에게 정부 포상 및 여성부 장관표창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현행 수준의 인센티브는 개인별 인센티브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이와 같은 움직임은 행정자치부가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와 '교육실적'을 포함하면서 광역자치단체들이 이와 연동해서 선택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받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별도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제도개선 방안이 환류점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제시되고 제도개선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워크숍의 경우 중앙과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환류를 점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일반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탁월하게 하여 제도의 성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던 사례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환류로 연결시킨 사례를 발굴해서 수범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 수범사례 발굴은 연구기관에서 여성부 심층과제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환류 실적점검을 위해 최소 3년간 제도 정착과정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2009년 도 착수 보고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진 : 김경희, 양애경, 김돌순, 송치선, 이선민, 김양희, 허라금
- 연구기간: 2009. 1. 1 ~ 2009. 12. 31

■ 연구결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을 통하여 고품격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질적 성장과 다원주의 가치, 창의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 ‘신 발전체제의 구축’을 국정목표로 수립하였으며, 국정과제의 하나로 ‘양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선정한 바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성평등을 향상시키는 한편, 성평등은 경제성장을 수반하는 것으로 분석됨(Herzog 등, 2005). 선행연구에서 김양희 등(2006)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경제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GRDP가 높은 사실을 발견한 바 있음.
- 이러한 선진한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평등의 글로벌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함.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이미 성 주류화에 의한 성평등 실현이 국제규범으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임.
 - 성 주류화는 종전의 자유주의 담론의 틀 안에서 형식적 평등에 초점을 둔 동등대우(equal treatment) 접근이나 여성을 특화시키는(special women targeted) 정책접근의 한계를 벗어나, 불평등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양성이 평등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Rees, 2000).
- 성 주류화가 ①주류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②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며 ③정책시스템과 문화가 성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고 볼 때(Corner, 1999),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의 참여를 담보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그간 국내에서 이를 위해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등 몇 가지 적극적 조치들을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 남교사 할당제 논란에서 보듯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분야의 여성의 약진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도 있음. 또한 적극적 조치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의 또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일부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여성을 특화하는 정책접근으로 간주하여, 마치 주류화와 상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에 대한 역풍의 시대에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고 국내 성 주류화의 실행 모델에 논리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성 주류화의 실천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 또는 제도로 성별 분리 통계,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性 認知) 예산을 들 수 있음. 이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책 시스템과 관행의 성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 예컨대, 성별 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 수요 및 수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성별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책의 형평성과 과학화, 선진화가 촉진될 것임(김양희외, 2007).
-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의 법적 근거(예: 통계법 제18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를 마련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기초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성 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의 원칙(제16조)과 예산서(제16조) 및 결산서(제57조) 작성 시 성 평등 관점의 통합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이 2010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그러나 아직 이 같은 제도들에 대한 관료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낮고, 도구 및 방법론의 개발이 미진한 상황임.
- 성 주류화 제도들은 긍정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지와 관료사회의 관심이 부재할 경우, 정교한 전략과 도구가 부족한 채 도입될 경우 기존의 여성정책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Verloo, 2001). 아울러, 성 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페미니스트 관료, 전문가/학자, 여성운동이 결합한 “velvet triangle” 또는 “trio of alliance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주장되기도 하였음(Woodward, 2004).
-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 시정부는 성 주류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료,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성 주류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 주류화의 집행을 추진하고 있음.
 - 성 주류화에 대한 관료들의 이해가 낮은 국내의 상황에서 실제 성 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들을 구비한 실행 모델을 개발·확산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부터 국내에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성 주류화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부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 주류화의 실행모델이나 모범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적용 과정에 성 주류화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이 같은 맥락에서 본원의 성주류화 연구실⁴⁾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개년도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 1차 년도에는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을 주제로, 공무원들이 성 주류화 제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제도 적용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아울러, 성 주류화 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제도들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실행 모델을 모색하는데 참고하였음.

- 연구 2차년도인 2009년에는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을 주제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함.
 - 첫째, 성 주류화의 쟁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성 주류화의 토착화에 기여하고자 함. 1차년도에서는 성 주류화의 근간이 되는 성평등 이론을 살펴보고 정책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년도에서는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논쟁들에 중점을 두고자 함. 예컨대 적극적 조치를 주류화와 다른 접근으로 보는 시각과 주류화의 세부실행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국내 성 주류화 실행모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 둘째, 성 주류화의 제도와 “velvet triangle”에 포함되는 관료, 전문가/학자, 활동가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즉 1차년도 운영하였던 지역플랫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례지역의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추진하고자 함.

4) 2008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2007년 6월 설치된 GM연구본부는 성 주류화연구실로 개명하였음.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연구자(년도): 김양희 외(2001) -연구목적: 성 주류화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문헌연구 -심포지엄 개최	-성 주류화 패러다임 소개 -성 주류화의 도구 및 방법론 소개 -우리나라 성 주류화 현황 분석
	2	*전체사업명: 성인지전략기획연구 -연구자(년도): 김양희 외 (2004) (여성부) -연구목적: 성 주류화에 관한 이론과 추진체계,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모델을 마련함 *단위과제 -과제명: 한국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연구자(년도): 김영옥, 마경희 (2004) (위의 '성인지전략기획연구'의 일환임) -연구목적: 성 주류화 차원에서 영역별 정책 현황과 방향을 도출함	-총 9개의 단위과제와 총괄과제로 구성된 대형 과제, 개별 과제의 접근은 설문조사, 문헌연구, FGI 등 다양함. -분야별 전문가의 시론을 수록함	-성 주류화의 이론 및 분야별 정책 방향 -성 주류화 패러다임 하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방향 제시 -성 인지 정책 분석(성별영향평가) 도구 개발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 등 -돌봄, 가족, 노동, 복지, 성매매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슈를 도출하는 전문가들의 시론 수록
	3	-과제명: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수용성과 제도 적용 현황, 실행방안 -연구자(년도): 한정원, 장운선 외(2008) -연구목적: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성 주류화 이론과 실행모델, 관련 제도의 적용 방안 마련하여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 정착에 기여	-문헌연구 -공무원과 전문가 조사 -관련 법제도 검토 -GM전문가 포럼 운영 -국제학술회의 개최 -성 주류화 플랫폼 구성·운영	-성 주류화 이론 연구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분석 -관련 제도 적용 현황과 전망 분석 -성 주류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마련 -국내외 파트너십 통한 지식·실행공동체 형성
본 연구	-과제명: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목적: ①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서 적극적 조치가 국내 성 주류화 실행모델에 통합되도록 논리적 체계와 방안을 마련함. ②성 주류화의 제도와 관계 집단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실행 모델을 개발함.	-문헌연구 -전문가 조사 및 분석 -2개 이상 사례지역의 참여적 실행연구(지역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 -국제 학술회의 및 워크숍 실시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의 논리적 통합방안 마련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전략 모색 -정책 사례 분석, 실용 적용 모델 개발 -한국의 성 주류화제도의 국제사회 홍보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차년도

-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근거
-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파악
 - 인식 및 수용의 걸림돌
-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적용의 현실과 전망 분석
 -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등
- 성 주류화의 법적 기반 강화방안 마련
 - 젠더법학연구센터
- 성 주류화제도의 실행 전략
-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GM파트너십 구축
 - 전국 GM파트너십 구축: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운영
 - 해외 GM파트너십 구축: 해외 전문가 면접, 워크숍 등
 -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 2차년도의 주요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성 주류화의 이론 연구

- 성 주류화의 이론 정립
 - 성 주류화 이론의 새로운 논쟁점 도출
 -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관계 모색
 - 국내 성 주류화 실행모델에 적극적 조치의 통합방안 제시
- 정책 사례 분석, 실용 모델 개발
 - 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의 성 주류화 위한 사례 분석 및 적용 모델 개발
 - 성 주류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2) 사례지역의 참여적 실행연구

- 2008년 1차 연구에서 운영하는 성 주류화 플랫폼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중 2개 이상 기관을 선정(부산/강원/충남)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중 노동정책 등 관련 부서/단체가 연관되는 사업을 한 가지 선정하고 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과정 등과 관련하여 실천행동과 그 효과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
- 당해 정책의 참여자(공무원, 전문가, NGO 등)에 대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간담회 등을 토대로 당해 정책 사업의 성 주류화 실행 모델을 모색함
-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접근방법 및 실행모델을 개발함
- 지역연구결과 워크숍 개최: 1회 * 2개 이상 기관

3) 전문가 조사 및 분석

- 공무원, 전문가/학자, NGO 활동가 의견수렴을 위한 서면조사
 - 성 주류화와 적극적조치의 연계방안 및 중앙-지자체 협력 전략개발을 위하여 성 주류화의 세 주체인 공무원, 전문가, NGO활동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의견을 수렴함.

4)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 실시

- 유럽 등 선진국가의 성 주류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 워크숍 실시
 - 학술대회 이외에 소규모 집단토론행식을 워크숍을 1회 실시

5) 해외 전문가 면접조사

- 성 주류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의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6) GM 포럼 개최

- 성 주류화 관련 논의를 선진적으로 이끌어 내고 대외적인 홍보 및 네트워킹을 위하여 GM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성 주류화 이론 및 모델 개발을 위한 포럼을 실시함.
 - 포럼은 주제발표와 전체토론으로 구성되고 발표자는 지정하나 참여대상은 열려있음.

□ 이상의 연구방법과 목적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여성부
 - 참여적 실행연구를 위해 선정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 참여적 실행연구를 위한 선정하게 될 정책사업 관계 부처 (예: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지역상공회의소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능동적 복지	양성평등 수준 향상
2	섬기는 정부	중앙-지방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사회갈등의 체계적 관리
3	활기찬 시장경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5. 기대효과

- 성 주류화의 현장 적용 모델 제시로 성 주류화의 실천력 담보
-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촉진
-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한국 성 주류화의 국내외 홍보

6. 연구기간(2/2년차): 2009. 1 - 12(12개월)

7. 과제담당자

- 본원 연구진: 양애경 연구위원, 김둘순 연구위원, 송치선 연구원, 이선민 연구원
- 외부 연구진: 한정원(부산 가톨릭대 교수), 허라금(이화여대 교수)
- 파트너 기관: 3개 지역 연구기관

8. 연구산출물

- 연구결과물은 3종으로 5권으로 발간할 예정임
 - 전체 보고서(1권)
 - GM 적용 사례 및 실행 모델(3권)

- 국제회의/세미나 자료집(1권)

9. 참여적 실행연구의 세부내용(지역연구기관/KWDI)

Action Research의 운영	
구 분	내 용
연구 분석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연구주체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 대상사업 규모는 비슷하게 조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것. - 최근의 정책이슈를 고려한 영향력(파급효과) 큰 정책으로 선정할 것. ·예시) : 녹색성장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각 사업별로 별도의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 할 것.
용어사용과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velvet triangle(3각 연대, 3 주체)’ 로 보고서에서 통일해서 사용. ○ 실행연구와 일반연구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주체와 대상과의 긴밀한 연계, 연구 참여자로서의 역할부여. -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관찰, 기록 : 교류, 교육,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과정 전반에 대한 변화, 조율과 관련한 일련의 기록을 말함(추후 구체적인 안 마련). -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를 통한 제도개선, 정책 환류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실천성을 드러내도록 할 것.
지역 연구기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연구 및 실행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T/F 팀 구성. - 정책 환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각 지역연구원에 연구과정에서의 자율성 부여를 원칙으로 하나 본원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보고서 작성할 것. ○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T/F 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특성에 맞는 ‘velvet triangle(3각 연대, 3주체)’ 구성 : T/F 팀 구성은 공무원,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함. - 각 지역연구기관은 T/F 팀 구성엔 실무 공무원으로, 워크숍엔 과장급 이상의 참여방안 모색등의 전략을 통해 과장급 이상 간부의 참여를 유도할 것. ○ 연구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서 작성 -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T/F 팀 구성 - FGI 운영 및 심층면접 수행 - 워크숍 기획 및 개최 - 연구참여자들의 성 주류화에 대한 개념 및 실행을 위한 노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요약문 제출 : 본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성 주류화제도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
<p>KWDI 역할 - 공동연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연구제안서를 바탕으로 각 지역연구 기관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 질문지 구성 : 필수질문지와 선택 질문지로 2원화. ○ 공동연구원(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계획서 검토 및 의견 제시. - FGI / 심층면접에서 필요한 질문내용의 취합과 지역 연구기관을 위한 공통 질문서 및 선택 질문지 작성 및 배포. - 워크숍, 기타 회의에 참석. - 실행 연구과정을 관찰하고 기록 내용 검토 및 의견제시. - 각 지역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비교분석.

<목 차>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추진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 효과

II. 성 주류화의 이론적 논의

1.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
2. 성 주류화와 성평등
3.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의 통합

III.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

1. 성 주류화의 쟁점과 전환적 성격 : 국제학술심포지엄
2. 외국의 성 주류화 실행사례 : 해외 전문가와의 면담

IV. 국내의 적극적 조치의 운영현황

1. 적극적 조치의 도입과정
2. 분야별 적극적 조치제도의 운영
3. 적극적 조치와 성별영향평가의 관련성

V. 국내 성 주류화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실행모델 개발

1. 국내 성 주류화 제도의 운영현황
2. 지역의 성 주류화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 가. 일자리창출정책에서의 성 주류화(부산시)
 - 나. 지역개발정책에서의 성 주류화(강원도)
 - 다. 다문화 정책에서의 성 주류화(충남)
3. 지역의 성 주류화제도 실행모델 개발

VI.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모델 개발 및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의견

VII. 결론 : 성 주류화제도의 정착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과제